

#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91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2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재무과장 오은겸)

#### 가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 반영(안 제33조)
  -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비율 확대 (현행) 100분의 70 → (개정) 100분의 100
- 2) 「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」 반영
  - 가) 관사의 일원화(안 제48조 및 제49조)
  - 나)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성 기준으로 개선
    - (현행) 소속 공무원 → (개정) 소속 직원(안 제47조, 제50조, 제51조 제54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및 제34조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 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 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8176(2026. 2. 20.)호]
- 4) 기 타
  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399호

- 예고기간: 2026. 2. 20.~2026. 3. 17.(25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# 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33조)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\*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조정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법령에 부합함.
- (안 제47조, 제50조, 제51조, 제54조)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」을 반영하여 관사 정의 및 관리 대상을 ‘직원’으로 일원화하고 관사 운영체계를 개선한 사항으로 적정함.
- (안 제48조, 제49조) 관사 구분체계 및 사용 허가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 기준을 간소화 및 일원화한 것으로 타당함.

#### 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관사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으로, 제도 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# 5. 토 론: 없음

### 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